
조사 결과 보고서

- 동료직원 업무방해 및 폭언 · 커피 투척 사건 -

2018. 10.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감사실



동료직원 업무방해 및 폭언·커피 투척 사건 조사 결과

1. 조사배경

- 2018. 8. 22(수) ○○지사 ○○부 전문직 ○급 A의 동료직원에게 대한 나누리 접촉방해 및 폭언·커피 투척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함.

2. 조사대상

[관련자 1]

- 소속 : ○○지사
- 직급 및 성명 : 전문직 ○급 A
- 입사일 : 20XX. X. X.
- 주요 근무경력
 - 'XX. X월 ~ 'XX. X월 : ○○본부(○○팀→○○실→○○팀)
 - 'XX. X월 ~ 'XX. X월 : ○○지사(○○부)

[관련자 2]

- 소속 : ○○지사
- 직급 및 성명 : 전문직 ○급 B
- 입사일 : 20XX. X. X.
- 주요 근무경력
 - 'XX. X월 ~ 'XX. X월 : □□지사(○○부)
 - 'XX. X월 ~ 현재 : ○○지사(○○부)

3. 조사 기간

- 2018. 9. 5.(수) ~ 2018. 9. 21.(금)
- ※ 관련자 문답 : 2018. 9. 6.(A), 9. 7.(B)

4. 조사반

- 조사반 : ○○○, ○○○

5. 조사 방법

- 관련자 문답, 동료직원·부서장·소속기관장 의견 청취
- ○○지사 나누리 접속 기록 등 자료 검토

6. 조사 결과

○ A가 B의 나누리 접속 차단과 업무방해 여부

- B는 2018. 8월에 나누리 비밀번호 오류로 나누리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생기자
- 2018.8.22.에 본부 정보화센터에 원인을 문의하였더니, A가 B ID로 총 4차례(8/4 1회, 8/16 2회, 8/21 1회) 틀린 비밀번호로 5회 연속 로그인을 시도하여 나누리 접속이 차단*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.
- * 나누리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시 본부 정보화센터에 요청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접속해야함.

- 조사자가 ○○지사 직원 29명의 나누리 로그인 기록(2018. 1. 1.~ 8. 22.)을 분석한 결과도 상기와 일치하였고, A도 본인의 컴퓨터에서 B ID로 접속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음.

※ 참고로 A는 평상시 직원 중 누군가가 본인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나누리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꿔서 많은 장애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나,

- ○○지사 직원 29명의 나누리 로그인 기록을 확인한 결과 1인 평

균 43회(실패율 16.66%) 인데 반해 A는 총 623회 로그인 시도 중 240회(실패율 38.52%)를 실패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비밀번호를 잘 못 입력하는 경우가 5.5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됨.

(붙임 1, ○○지사 직원별 나누리 비밀번호 실패 현황)

- ☞ A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발생한 나누리 로그인 접속 실패가 동료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의심하며, 동료직원인 B도 피해를 당해 보라는 생각을 갖고 B의 ID로 총 4차례 나누리 로그인을 시도하였고, 그 때마다 틀린 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입력함으로써 나누리 접속을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B의 업무를 방해함.

○ 동료직원(B)에 대한 폭력(욕설과 커피투척)행위 여부

- 상기와 같이 A가 B의 ID로 나누리 로그인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게 된 부서장이 A와 B를 불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.
- 부서장에게 경고를 받은 A는 나누리 접속이 안되는 이유가 B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B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고, 자신이 마시던 뜨거운 커피를 B의 얼굴에 뿌려 1도 화상(붙임 2, 확인서 및 진단서)의 상해를 입혔음.
- ☞ A는 본인의 나누리 접속이 안 되는 것이 ○○지사 정보화담당자인 B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음.

7. 조치 의견

○ A는 상기와 같은 행위로 다음과 같이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함.

- 고의로 B의 나누리 ID로 5회 연속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여 B가 나누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윤리강령」 제3조(임직원의 기본윤리)를 위반하였고,
- 자신의 나누리 접속 실패가 B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B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커피를 투척하는 등의 폭력을 가하여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윤리강령」 제10조(임직원 상호관계)를 위반함.
- 특히, A는 공용시설인 전화선을 절단하고 민원전화 응대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로 2018.7.20.에 “경징계(견책)” 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다시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하여

☞ 감사규정 제16조(감사결과에 대한 조치), 제16조의2(감사결과 처분 요구 기준)에 따라 “중징계(정직)” 처분 요구

○ B는 제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 별도의 처분요구 불필요

[붙임 1] ○○지사 직원별 나누리 비밀번호 실패 현황

(기간 : 2018. 1. 1. ~ 8. 22.)

번호	이름	로그인 성공	로그인 실패	합계	실패율
1	A	383	240	623	38.52
2	B	368	96	464	20.69
3	이**	278	85	363	23.42
4	김**	291	75	366	20.49
5	황**	140	75	215	34.88
6	오**	147	72	219	32.88
7	배**	230	69	299	23.08
8	양**	223	69	292	23.63
9	이**	425	50	475	10.53
10	서**	210	47	257	18.29
11	장**	258	38	296	12.84
12	차**	247	37	284	13.03
13	주**	99	31	130	23.85
14	김**	262	29	291	9.97
15	임**	154	29	183	15.85
16	이**	282	27	309	8.74
17	윤**	241	26	267	9.74
18	전**	133	26	159	16.35
19	김**	131	24	155	15.48
20	박**	264	19	283	6.71
21	최**	195	17	212	8.02
22	김**	288	16	304	5.26
23	심**	123	16	139	11.51
24	이**	140	14	154	9.09
25	이**	262	12	274	4.38
26	김**	122	6	128	4.69
27	한**	135	5	140	3.57
28	유**	128	2	130	1.54
29	박**	109	1	110	0.91
총합계		6,268	1,253	7,521	16.66
평균		216	43	259	16.66

※로그인 횟수 100회 미만 제외